

의안번호	2212249
의 퇴 인	김정호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8.
추계번호	25A4474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(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)	정부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등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2조(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등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이때 “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”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물품·용역을 공급하거나 대상기관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(안 제15조의제2항)
 - 참고로, 협력업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현행 재정지원 사업(“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”)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
 - 동 사업은 현행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42억 8,300만원 규모이며,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산업기술보호 교육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의 지원 대상인 협력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향후 발생할 “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의 복구 비용” 수준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현행 사업(“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2결산	2023결산	2024결산	2025예산
보안인프라구축 지원	200	200	200	480
기술보호 전문컨설팅	200	200	300	300
산업기술보호 교육	440	610	472	472

주: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기준임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